

# 예 산 총 칙

200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8,348,913	12,250,467
일반회계	367,338,586	11,020,158
일반회계	367,338,586	11,020,158
기타특별회계	19,234,360	577,031
주택사업특별회계	400,586	12,018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87,992	14,6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36,696	49,101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873,840	26,215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352,698	40,58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124,991	33,750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6,713,271	201,398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440,214	73,2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35,354	67,061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429,973	42,899
기반시설특별회계	538,745	16,162
공기업특별회계	21,775,967	653,27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326,633	459,79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49,334	193,480

제 2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7,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42,38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자산및물품취득비